

I. UAE 법체계와 헌법

II. UAE 사법제도

1. UAE의 법원(法源)
2. UAE 법제(法制)

I. UAE 법체계와 헌법

UAE의 사법제도는 프랑스, 로마, 이집트 및 이슬람 등 대륙법(Civil Law) 계통에 강한 영향을 받아 아랍세계에서도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UAE 정부형태가 연방공화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UAE는 7개의 에미리트(Emirates, 토후국)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에미리트는 준 독립국가처럼 독자적 관할 구역과 역내 관할권을 행사한다. 7개의 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아즈만, 푸자이라, 움알쿠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제이나 각 에미리트별로 왕정을 취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법체계

손 현 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특집 Emerging Countries II]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습법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 거래와 계약이 늘어나면서 상법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법률사무소 변호사만이 변호사로서 재판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중동지역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인 UAE에서 점차적으로 중재(仲裁)가 분쟁 처리방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UAE 헌법은 7개 토후국(Emirate)으로 구성된 UAE 연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정치적 토대가 된다. 헌법 전문을 보면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쿠아인, 푸자이라 지도자들은 연방을 설립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안정을 달성하고, 그리고 높은 국가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염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

UAE 헌법은 1971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전문 및 10장 151조로 구성되어 있다.³⁾ 헌법은 연방국가가 설립된 1971년 12월에 잠정헌법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연장을 거쳐 1996년 5월에 연방최고회의에서 정식헌법으로 채택되었다.

헌법은 연방정부의 주요 헌법 기관인 최고통치자위원회(Supreme Council of Rulers), 대통령, 내각, 연방평의회, 연방최고법원 등을 규정한다. 최고통치자위원회는 각종 헌법기관 중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UAE를 구성하는 7개 에미리트의 통치자들의 회의로 최고 권한을 갖고 연방 대통령을 선출·임명하고 수상과 연방 최고법원 판사를 지명한다.⁴⁾

최고통치자위원회는 공식 회의가 연 1회 있고, 필요시 수시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의사결정은 5명 이상의 통치자들이 찬성하여야 하나, 아부다비 및 두바이의 통치자들에게는 거부권이 주어진다. 현재 대통령인 칼리파는 막대한 재정원조를 바탕으로 두바이를 제외한 5개 에미리트의 통치자들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최고통치자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대통령이 행한다.

2) UAE Constitution 전문.

3) 1971년 영국이 휴전 토후국과의 모든 조약을 종결함에 따라 1971.12.2 라스 알 카이마 에미리트를 제외한 6개 에미리트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창설, UAE 잠정헌법을 제정하고 아부다비 에미리트 통치자인 셰이크 자이드(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가 대통령에, 두바이 에미리트 통치자인 셰이크 라쉬드(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가 부통령 겸 총리에 취임하였다.

4) 연방헌법 제46조, 제47조.

II. UAE 사법제도

1. UAE의 법원(法源)

UAE의 법원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연방법⁵⁾과 각 토후국법⁶⁾으로 나뉜다. 각 토후국 사법당국은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사법체계에 적용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진다.⁷⁾ 또한 헌법과 연방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토후국은 개별적으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각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또한, UAE 법체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원인 샤리아법(al-Sharia)이 있다. 이는 상속,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등 가족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이 법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법정은 우선적으로 연방법 조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연방법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은 소속 토후국의 관련법 조항을 다시 검토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샤리아의 조항이 적용된다.

2. UAE 법제(法制)

이슬람 사회인 UAE의 사법부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법원에는 연방최고법원, 지방법원 성격의 각 에미리트별 민사·형사 법원, 그리고 이슬람 정신에 의거하여 재판하는 샤리아 법원이 있다. 재판은 대부분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형과 같은 중형과 종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샤리아 법원에서 이슬람 정신(샤리아법)에 의거해 재심한다.

토후국의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⁹⁾ 두바이와 라스 알-카이마를 제외한 5개 토후국에는 토후국 법원이

5) 연방법(al-Qanun al-Ittihad)은 연방전체에 적용되는 법으로 연방의회 혹은 연방부처에서 입법 후 승인 절차를 거친다. 두바이와 라스알-카이마를 중심으로 독자권을 가진 입법과 사법 그리고 경제법 분야를 제외한 연방법이 전체 토후국에 두루 적용된다.

6) 토후국법(al-Qanun al-Imarati)은 토후국 의회가 입법하고 토후국의 지도자가 법 또는 법령으로 승인한다. 이 법은 전체연방이 아닌 각 토후국에서만 적용되며,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왕족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7) 연방헌법 제104조.

8) 연방헌법 제105조.

9) 제1심 법원, 항소법원, 연방최고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은 연방사법제도에 참가하여 각각 토후국에 있으며, 연방최고법원은 아부다비에 있다.

있으며, 이들 5개 토후국 법원은 연방사법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법원과 협력한다는 조건하에 연방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법 관할권을 연방으로 이관한 5개 토후국에 있어 소송·항소·상고심은 연방 제1심 법원(the Federal Court of First Instance),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s), 그리고 연방최고법원(Federal Supreme Court or Federal Court of Cassation)에서 각각 담당한다. 각 토후국의 법 진행 절차는 전체적으로 공통되고, 일부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토후국에서는 재판이 다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두바이와 라스 알-카이마는 독자적인 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최고법원에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두바이에서는 소송·항소·상고심이 두바이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Dubai Court of Appeals), 그리고 최상위는 최고법원(별칭: 파기원(破棄院: Dubai Supreme Court or Court of Cassation))에서 진행된다.

항소법원 판결은 두바이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이 상소심의 최상위로 여기서 아부다비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다. 두바이, 라스 알-카이마 이외의 각 토후국은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최고법원이 최종심이 된다.¹⁰⁾

UAE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공증인, UAE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의해 정식 서명날인이 된 위임장을 가지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으로 임명된 것을 증명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표1】UAE 법원 구조



10) 라스알-카이마는 최고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법원(Ras Al Khaimah Cuourt of Appeal)이 최종심으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 연방최고법원(The Federal Supreme 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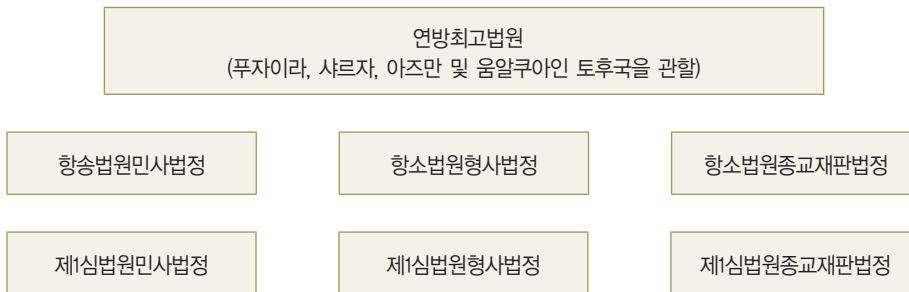
아부다비에 위치한 연방최고법원은 대법원장과 연방최고회의¹¹⁾가 임명한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연방최고법원은 연방법 및 각 토후국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 장관과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소송 등을 관장한다.¹³⁾ 또한 각 토후국간 분쟁 및 토후국과 연방정부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한다.

연방최고법원의 중요한 기능으로 하급심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급심법원이 법률을 바르게 적용·해석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하급심법원은 연방최고법원이 정한 법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¹⁴⁾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 모든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¹⁵⁾

두바이 에미리트는 독자적인 최고법원(파기원)을 두고 있으며, 두바이, 라스알-카이마 외의 모든 에미리트는 아부다비에 있는 연방최고법원이 상소의 최종심이 된다.

【표2】연방최고법원



(2) 민사법원(民事法院)

민사법원(또는 제1심법원)은 채권회수를 포함하여 상사문제부터 해상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심리한다. 민사법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 원리는 연방법, 관습법, 공정한 원칙 순이다.

11) 연방최고회의는 UAE의 최고입법기관으로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각 토후국으로부터 선정된 의원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연방법은 이 국민의회와 연방각료의회에 의해 제출된 법령을 연방최고법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성립되어 있다.

12) 연방헌법 제96조.

13) 연방최고법원은 UAE 최상급법원으로서 법률문제에 관한 논점만을 심리한다.

14) 연방헌법 제99조.

15) 연방헌법 제101조.

당사자들은 판결이 있는 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실문제, 법률문제를 이유로 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언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1심법원의 경우 소송액에 따라 판사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적이다.¹⁶⁾

상위에 있는 통상적으로 5명의 판사로 구성된 두바이 최고법원인 파기원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들은 법률문제에 관한 논점만 제출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는 항소법원 판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파기원에 상소해야만 한다. 파기원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형사법원(刑事法院)

UAE에 있어서 형사소송은 범죄가 생긴 재판관할구의 지방경찰에의 고소와 동시에 개시된다. 수사기간 중에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경찰은 고소된 사건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초기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은 공소제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정식으로 송치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서 검찰관에게 조회하고 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증인 또는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검찰관이 판단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한다. 여기서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를 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를 할 것인가 불기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량으로 이를 승인 또는 부인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내리기까지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예도 있다.

형사법원도 민사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판사의 수가 정해진다. 벌금형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 구금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판사가 배당되며, 3년 이상 구금, 중신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인 경우 3명의 판사가 배정된다.

16) 10만 디르함(한화 약 3,500만 원) 이상의 소송에 대해서는 3인 합의심으로 진행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심으로 진행된다.

(4) 샤리아 법원(이슬람 법원)

샤리아는 이슬람법의 첫 번째 원천이자 입법자인 알라가 예언자 무하마드를 통해 제정한 법규범을 말하며, 이슬람법은 샤리아를 적용하여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도 포함하므로 샤리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샤리아 법원은 UAE의 민사, 형사법원과 같이 협조하는 기능을 한다.

샤리아 법원은 종교재판법원으로 이슬람 정신에 근거를 두며, 주로 이슬람 교도의 민사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분쟁당사자가 이슬람 교도가 아닌 경우 그 사건은 샤리아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샤리아 법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이혼, 유산상속, 후계자 선정, 이혼수속, 양육권 등 가족법에 관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샤리아 법원은 UAE의 성문법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슬람 종교 재판에 관계된 법원(法源)의 문언에 존재하는 이슬람적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UAE 법제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 상속, 양육권 등을 다루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샤리아 법원에서 이슬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두바이, 라스 알-카이마를 제외한 연방수준의 샤리아 법원에서는 최초 하급 형사법원에서 공판이 이루어진 강간, 강도, 음주운전 및 이것들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 일정한 형사사건의 항소사건도 심리할 수 있다.

17) 형사정책연구(Korea Criminological Review) 제21권 제4호(통권 제84호, 2010 겨울호), 304쪽.
